공 개

의안번호	제 182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 12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규정 신설 및 자기주식 관련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코스피시장 반기 자본 전액 잠식 관련 정보제공과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 발생 시 공시의무 부과(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안 제7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안 제6조 및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나. 최근 반기 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시 공시의무 부과(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안 제7조)

다.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사업목적 추가·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결의 시 공시의무를 부과(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별지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7조제1항제2호마목(2) 중 “의견거절인 때”를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때”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1조제5호 중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을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이상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 ---------- ---------- ---------- ----------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	가. ----------

현 행	개 정 안
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2) ---------- -------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시변경)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본다.	제31조(공시변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내에 취득	5. ----------

현 행	개 정 안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이상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에는 ----------.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별지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장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사업목적 추가·변경을 결의한 때. 이 경우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포함된 주주총회 결과를 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날과 같은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6조제1항제3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 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9조제4호 중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을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이상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제2항(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 ---------- ---------- ----------

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 ---------- ---------- ----------
가. ~ 바.(생 략)	가. ~ 바.(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상장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사업목적 추가·변경을 결의한 때. 이 경우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포함된 주주총회 결과를 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날과 같은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 ---------- ---------- ----------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	가. ---------- ----------

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나. ~ 라. (생 략) 4. (생 략) ③·④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시변경)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 1. ~ 3. (생 략) 4.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24. (생 략)	제29조(공시변경)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이상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에는 ----------. 5. ~ 24. (현행과 같음)

<별지3>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6조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시신고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 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1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다목 및 라목, 제6호, 제7호나목의 (2)부터 (4)까지, 제8호 및 제9호(단,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	제6조(공시신고 사항) -------- ----------

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넥스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1항

	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88